

#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

##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

### ■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	완료	미비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		
본인 신청시	0		서약서	-	건본주택 비치, 무주택 인증서류(서약서로 대체)			
	0		당첨자 약약서	-	건본주택 비치			
	0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건본주택 비치			
	0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		
	0		인감증명서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/ 본인 발급용 /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			
	0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			
	0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(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			
	0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	
	0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	
	0		청약통장순위 (가입)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			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			
	0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			
	0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[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]			
	0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(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참조) (단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)			
	0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비사업자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			
	0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		
	0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단독세대일 경우			
	0		복무확인서	본인	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근원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			
	0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 또는 자녀	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"상세"로 발급			
	0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			
	0		기본증명서	자녀	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			
	0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			
	0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			
	0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			
	0	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해당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· 발급 시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		
	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	0		위임장	본인	건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		
		0		인감증명서	본인	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		
		0		인감도장	본인			
0		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			
0			인장	대리인		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.  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발급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,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

##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기준 및 증빙서류

### ■ 가구 소득 기준

공급유형		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 ~120% 이하	6,030,161원~ 7,236,192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393,648원~ 8,872,376원	7,778,024원~ 9,333,628원	8,162,400원~ 9,794,879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 ~140%이하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393,648원~ 10,351,106원	7,778,024원~ 10,889,232원	8,162,400원~ 11,427,35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 ~160%이하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9원~ 12,444,837원	9,794,880원~ 13,059,838원
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8,442,225원~	9,931,888원~	9,931,888원~	10,351,107원~	10,889,233원~	11,427,360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	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 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추첨제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×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 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### 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 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 3,100만원 이하	건축물	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		
			주택	건축물 종류	지방세징 시가표준액
			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
		주택 외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
토지	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				

#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

##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기준 및 증빙서류

### ■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)	* 해당직장 *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소득을 추정	*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*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 또는 최근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 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(원본) 제출	*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,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 관리공단 *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	*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* 해당직장 * 국민연금 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	* 접수장소

### ■ 자산기준 확인 방법

구분	내용
자산보유 기준	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자산기준(부동산가액 3.31억원 이하)충족하는 세대는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'부동산소유현황'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발급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동산 소유현황 확인방법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→ 등기열람/발급 → 부동산 → '부동산 소유현황'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후 물건지에 대한 토지,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</li> <li>1. 사례1) 청약자격 상 무주택으로 인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공동주택공시가격</li> </ul> </li> <li>2. 사례2) 청약자격 상 무주택으로 인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</li> </ul> </li> <li>3. 사례3) 오피스텔, 상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[건물분] 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기타조회 → 기준시가조회 →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</li> <li>☞ [토지분]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→ 개별공시지가</li> </ul> </li> <li>4. 사례4) 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개별공시지가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자산의 합이 3.3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 ※ 추첨제로 당첨 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하며,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복주택 내방 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.)</p>